

고양3차 풍림아이원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안내: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이며,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 1) 고양시는 2003년 6월 7일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분양권전매제한(분양계약체결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이 적용되며, 1순위자중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신 분[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의 당첨 및 주택소유사실 포함]은 1순위 청약이 제한(2순위 청약가능)됨
 - 2)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기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에 한함. 이하 동일함] 이 되는 자(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동안 투기과열지구내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후 분양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제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음.
-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2007.9.1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주택으로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며, 신청자가 청약가점 기입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 부채상환비율(DTI)등 주택담보 대출제한이 적용됨.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 주택과 제9788호(2008. 4. 30)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및 주택과 제12611호(2008. 6. 2)로 입주자모집공고 변경승인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297-1번지 외 19필지 ■ 대지면적 : 10,157㎡(아파트 9,488㎡ / 근린생활시설 669㎡)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6~18층 2개동 총211세대(특별공급(3자녀 특별공급 6세대 포함) 2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총별구분	공급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세대별 기타 공유면적	계			
				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 간 주 거 주 택	21957-01	2008000548(1)	109,9325	84,8265	25,1060	109,9325	31,0451	140,9776	44,9668	1층	9
										2층	12
										3층	12
										기존층	166
										최상층	12

주택형 (㎡)	층별 구분	공 급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 납부일정(60%)						잔 금 (30%)	
						1차 (5%)	2차 (5%)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대지비	건축비	계	08.07.02~07.04	08.08.18	08.12.18	09.05.18	09.09.18	10.01.18	10.04.19	10.07.19	입주시	
109.9325	1층	9	114,435	160,565	275,000	13,750	13,750	27,500	27,500	27,500	27,500	27,500	27,500	27,500	82,500
	2층	12	114,435	165,565	280,000	14,000	14,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84,000
	3층	12	114,435	171,565	286,000	14,300	14,300	28,600	28,600	28,600	28,600	28,600	28,600	28,600	85,800
	기준층	166	114,435	176,565	291,000	14,550	14,550	29,100	29,100	29,100	29,100	29,100	29,100	29,100	87,300
	최상층	12	114,435	181,565	296,000	14,800	14,800	29,600	29,600	29,600	29,600	29,600	29,600	29,600	88,800

- 신청자격 및 요건등의 기준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08.06.13)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공급 총액 범위 내에서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고,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등록세, 취득세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bal코니 확장금액은 별도 기재함)
- 상기 공급금액은 bal코니 확장비용 및 별도계약품목(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bal코니 확장 및 별도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은 층별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한 금액임.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 시점 이후 납입 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가 지연되어 4차중도금 납부일이 지연된 경우 이후 중도금납부일도 지연된 만큼 순연하여 수령기로 함.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1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고양시는 2003년 6월 7일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분양권전매제한(분양계약체결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이 적용되며, 1순위자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신 분[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당첨 및 주택소유사실 포함]은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청약이 제한(2순위 청약가능)됨.
- 2002.09.05이후(9월5일 해당)에 통장가입하신 1순위자는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에 한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함.
- 주택규모 표기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0.3025 또는 형별면적(㎡)÷ 3.3058]
-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 정부가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보증받은 아파트는 안심하시고 분양받으셔도 됩니다.

■ bal코니 확장공사비

해당세대	주택형(㎡)	층 수	전체확장	거실+주방	침실	비 고
211	109.9325	1~15층	8,910,000	6,820,000	6,710,000	방화유리판 포함
		16층이상	7,370,000	6,160,000	5,830,000	방화유리판 제외(스프링쿨러설치)

- ※ 침실확장 및 전체확장의 경우 침실1은 일부 확장됨(침실2, 침실3은 전체 확장됨).
- ※ 발코니확장시 16층이상 스프링클러설치(발코니샷시 방화유리판은 15층이하에 설치) / 대피공간은 침실3으로 계획하고 침실3의 도어는 목재방화문으로 계획함.
- ※ 발코니 비확장시 발코니바닥은 타일이고, 천정·벽체는 수성페인트마감임.
- ※ 발코니확장공사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별도계약품목(바닥, 가구)

(단위: 원, VAT포함)

Type	확장여부	거실, 주방바닥	불박이장		합 계	비 고
			침실1	침실2		
109.9325	기본형	2,387,000	2,244,000	1,056,000	5,687,000	
	확장형	3,069,000	2,497,000	1,056,000	6,622,000	

- ※ 거실, 주방바닥의 경우 라이트 크리마마필(대리석타일 600*600)이 설치됨(비선택시 강화마루가 설치됨).
- ※ 침실확장을 한 경우 거실, 주방바닥 별도품목선택시 기본형을 선택해야 하며, 거실+주방확장을 한 경우 불박이장 별도품목선택시 기본형을 선택해야 함.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 특별공급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단체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과거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
- 특별공급세대 [전용 85㎡이하 공급규모 211세대의 10% 이내로 21세대]

주택형(㎡)	공급세대	비 고
109.9325	21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 06. 17(화)(10:00~14:00) 당사 견본주택
-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 06. 17(화)(15:30) 당사 견본주택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내
- 구비서류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2008.06.13)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 입증서류중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1통(주택공급신청용),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특별공급 대상임을 인정하는 장애인인정서만 인정함.[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등 기타서류 불가]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으로 신청가능하나 중복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2. 3자녀 특별공급

- 특별공급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8.06.13)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1988.06. 13일 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과거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

• 3자녀 특별공급시 배점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계	100	기준	점수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한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등)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 (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2):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청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량의 3%를 특별공급 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배정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수 없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5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에게 40%, 인천시 거주자에게 10%를 각각 공급함.(아래표참조)
 - 특별공급세대

구 분	공급세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비 고
109.9325㎡	6	3	2	1	

※특별공급 신청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특별공급 부적격처리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 06. 17(화)(10:00~14:00) 당사 견본주택
 -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 06. 17(화)(15:30) 당사 견본주택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구비서류
 - 특별공급신청서(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등에 한함)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
 - 인감도장(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인감증명서1통(용도:주택공급신청용)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3. 일반공급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2008. 06. 13) 현재 고양시 주택건설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고양시 6개월미만 거주자 포함)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고양시 주택건설지역에 6개월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로 신청가능함.
- 예치금액이 낮은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높은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해당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차액을 증액변경 하여야 신청가능함.(단, 지역간 예치금액을 감액하거나 또는 거주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청약하는 경우 변경생략 가능)
- 동일 순위자중 경쟁이 있을 경우 고양시 6개월이상 거주신청자가 우선하며, 수도권지역 거주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수 있음.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해당제한한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2,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하고,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1순위 청약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면적구분 (전용면적)		신청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 영 주 택	1순위	공통	가점제 대상자	·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한 분	고양시 / 수도권	2008.06.18	■ 접수장소 - 인터넷 국민은행 가입자: www.kbstar.com 국민은행외 가입자: www.ap2you.com - KB모바일 Mbank.kbank,Bankon ■ 접수시간 : 08:30 ~ 18:00	- 일 시 : 2008. 06. 27. 장 소 : 당사건본주택 및 경기신문 게재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대화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추첨제 대상자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전용면적 85㎡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980.08.29 이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1981.05.22일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중 청약자격 제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로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관련예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분 (2002년 9월 5일 가입자 포함)					
	2순위	공통	가점제 대상자	· 2순위 청약자 전원				
			추첨제 대상자	· 해당 사항 없음(별도 추첨제 신청자격 없음)				
		전용	85㎡이하	·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면적		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액을 6회 이상 불입한 제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중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순위자중 상기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한 분			
3순위	전용 면적	85㎡이하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2008.06.20	- 국민은행 인터넷·모바일 - 시간 : 08:30 ~ 18:00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가능(창구 접수시간: 09:30~16:30)

- 인터넷 청약 안내 [국토해양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인터넷 청약등의 시행지시”(2006.11.27)에 의함]

-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별, 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의할 것을 권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모바일 신청접수방법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1,2순위: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3순위: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중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이 있으신 분	
	KB모바일	-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 on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분(WIFI폰 기종만 가능)	-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청약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에 접속
	KB모바일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KTF, LGT : KB뱅킹 접속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2) 인터넷, ARS, 모바일 당첨확인서비스 이용방법

구 분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인터넷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접속→부동산→분양관→사이버청약지점→당첨확인	· 금융결제원홈페이지 (www.apt2you.com)에접속→청약센터→당첨자조회
	이용기간	· 2008. 06. 27 ~ 2008. 07. 06 (10일)	· 2008. 06. 27 ~ 2008. 07. 06 (10일)
전화 (ARS)	이용방법	·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701]	1369 [서비스코드: 5#]
	이용기간	· 2008. 06. 27 ~ 2008. 07. 06 (10일)	· 2008. 06. 27 ~ 2008. 07. 06 (10일)

KB모바일	이용방법	· SKT: MBank접속→KB StarNet→모바일주택청약→PIN입력→당첨확인 · KTF, LGT : KB뱅크→모바일주택청약→PIN 입력→당첨확인	-
	이용기간	· 2008. 06. 27 ~ 2008. 07. 06 (10일)	-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 상	· 국민은행 주택청약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분 중 당첨자	-
	제공일시	· 2008. 06. 27 08:30(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노약자·장애우 등 창구 청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특별공급 (3자녀이상 포함)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등본 또는 건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1통)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각1통 · 특별공급신청서(분양사무실 비치) 및 배정기준표(분양사무실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1통(해당자: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일반공급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국민은행 비치) · 청약예금,청약부금 통장(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대리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주민등록 등,초본등 (배우자 관계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에 발행분에 한함. [단,특별공급(3자녀이상 특별공급포함) 대상자는 7일 이내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함]

※ 당첨자 중 국토해양부 등의 전산검색을 통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당첨 및 계약이 임의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2005.7.1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신청접수방법

- 3자녀 특별공급

· 전용면적이 상관없이 민영주택은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3%를 3자녀 우선공급대상자에게 우선공급하며, 3자녀 우선공급신청접수결과 미달된 세대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일반공급

· 공통: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고양시 6개월 이상 거주자와 수도권거주자 (고양시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에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2순위: 청약신청자 전원 가점제 청약접수를 원칙 [청약자는 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 선택 불가하며 신청자 전원 가점제로 청약접수됨]으로 하며, 가점제 입주선정결과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함. 단, 1순위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분류하여 청약접수함.
- 3순위: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시 신청자격 착오기재 등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가점제에 의한 입주자 선정방법

1) 청약 가점점수 선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5년이상~6년미만	12	11년이상~12년미만	24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미만	2	6년이상~7년미만	14	12년이상~13년미만	26	
		1년이상~2년미만	4	7년이상~8년미만	16	13년이상~14년미만	28	
		2년이상~3년미만	6	8년이상~9년미만	18	14년이상~15년미만	30	
		3년이상~4년미만	8	9년이상~10년미만	20	15년이상	32	
		4년이상~5년미만	10	10년이상~11년미만	22			
②부양 가족수	35	0명	5	3명	20	6명이상	35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4명	25			
		2명	15	5명	30			
③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미만	1	5년이상~6년미만	7	11년이상~12년미만	13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월이상~1년미만	2	6년이상~7년미만	8	12년이상~13년미만	14	
		1년이상~2년미만	3	7년이상~8년미만	9	13년이상~14년미만	15	
		2년이상~3년미만	4	8년이상~9년미만	10	14년이상~15년미만	16	
		3년이상~4년미만	5	9년이상~10년미만	11	15년이상	17	
		4년이상~5년미만	6	10년이상~11년미만	12			

2)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미만을 10년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1조의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제곱미터 초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된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가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부여함.

3)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 소유 주택: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외 소유 주택: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4)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일.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검색대상: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 등본: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처리일 (3)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에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검사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주택 소유자는 제외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7)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소형·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장기간보유특례)

- ① (현재: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소형·저가주택을 10년미만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 안됨(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② (현재: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특별공급(3자녀 특별공급 포함)의 경우

1)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
특별공급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청약통장으로 일반공급 주택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중복당첨된 경우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처리함.

2)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주택에 대한 중복청약
특별공급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은 청약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중복청약 및 당첨이 가능하나, 먼저 당첨된 주택이 재당첨제한 대상주택일 경우 먼저 당첨된 주택만 계약가능

• 일반공급의 경우

- 1)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
 - 동일한 통장으로 중복청약 불가(1인 2건이상 신청시 모두 무효 처리)
 - 동일세대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중복당첨된 경우 그 중 1주택만 선택하여 계약(중복당첨되기 전에 먼저 당첨된 주택을 계약한 경우에는 선택권이 없으며, 분양가상한제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계약)

■ 경과기간 및 요건 (전용면적 기준)

•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①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횡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② 94.8.15이전 청약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①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②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③ 청약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3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주택형별	금 액	신 청 금 납 부 방 법
청약신청금	전주택형	100만원	가능한 한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08.06.30)이후 평일 09:30~16:30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
-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신청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주민등록증
- 제3자 대리 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주택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위임장 1부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함. [단,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한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 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건본주택에서 신청자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호수를 결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은행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한 후,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단, 1순위자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정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정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동일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주택건설지역 6개월 이상 거주신청자가 수도권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고, 수도권지역 거주자 신청분(고양시 주택건설지역 6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포함)은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당첨자중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건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정당 당첨자) : 2008년 07월 02일 ~ 2008년 07월 04일 (3일간, 평일시간 : 10:00 ~ 16:30)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장소 : 당사 건본주택(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대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입주자로 선정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며 이후 당첨자로 관리되어 재당첨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중도금, 잔금은 다음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 무통장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중도금·잔금납부일에 국민은행 전국 본·지점에 무통장입금(타행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 타행입금 불가 ※ 입금문의 : 0 2) 528-6429~30 ※ 지정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 하더라도 계약미체결시에는 당첨효력 상실될 수 있음
지정은행 : 국민은행 계좌번호 : 089537-04-000632 예 금 주 : (주)다올부동산신탁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됨.
- ※ 계약금 무통장입금시 계약자(당첨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전 당사 견본주택에 당첨여부 및 계약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계약자(당첨자)의 책임임]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서 류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단, 인터넷, 모바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제출생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아파트 계약용) 및 인감도장 • 본인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20세 이상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1통) - 주민등록 등/초본 1통,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1통(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1부 (해당자에 한하여 필요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1통(공급 신청시 배우자 확인이 되지 않은 당첨자 등에 한함) • 계약금(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당첨자중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 (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가점항목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가점제 1순위 당첨자중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추첨제 1순위 당첨자는 2주택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 1순위 당첨자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자 - 2002.09.05 이후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한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자로 판명될 경우(2002.09.05 가입자 포함) - 1,2,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로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형사고발 조치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1건만 계약체결 가능함(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에 의거)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을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에 준함.

■ 입주예정일 : 2010년 10월 중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 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입주 개시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당첨자(3순위 당첨자 및 계약미체결자 포함)는 향후 신청주택에 따라 일정기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경로당 1개소(93.86㎡), 관리사무소 1개소(93.86㎡), 놀이터 2개소(655.26㎡) 등
- 기 청약자격 전산 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 등(거주지역, 부양가족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 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요청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신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공급신청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으로 적출된 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받은날 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재확인기간(14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본 주택의 당첨자(3순위 당첨자, 계약미체결자 및 예비당첨자중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 포함)는 당첨사실이 유지되므로 추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는 자 제외)는 분양주택의 입주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다른 분양주택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입주 전 기존 임대주택으로 전환 받을 경우에는 새로이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공급계약을 취소함.
- 동일한 청약예금 등으로 공급신청서를 발급받아 당첨일 이전에 타주택이 당첨되었을 경우 본주택의 당첨을 취소하며, 신청자는 당첨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및 해약불가함.
- 단지내 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이미지 내용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건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하며, 철거 전에 비디오로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으며,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 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 공용부분의 면적(계단실 등)은 전체세대로 균등하게 계산 배분됨.

- 단지와 인근 토지사이의 경계 옹벽 등은 행정관서의 지침에 의해 재질이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특성상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아파트 입면(외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은 이유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입면차별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으며, 주택 축벽문양 및 부착물은 대관협의 및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대관 협의 등에 의해 단지내 시설물(담장, 편의시설, 미술장식품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 등), 입면, 지붕 및 기타 구조물의 형태, 색채, 동·호수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
- 본 아파트의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5장(제42조~제59조)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본 아파트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사전점검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은 사전점검 14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고 점검기간은 3일 이상임 (직장근무를 고려하여 토,일요일 포함됨)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시(개별확장 포함) 대피공간의 대용이 되는 침실3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및 제4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은 합법적인 규정에 의해 시공되어야 하며 반드시 방화문이 설치된 피난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만일, 계약자 임의대로 추가확장하거나 불법 확장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소화설비 부족 및 난방 열손실 등의 부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셔야 함.
- 발코니확장공사와 옵션공사는 아파트 공급계약과 무관하게 시공사인 풍림산업(주)와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체결하며 , 발코니 확장공사비와 별도품목비는 상기 아파트 공급금액에는 미 포함 되었음.
- 발코니 비확장시 발코니 바닥은 타일이고, 천정·벽체는 수성페인트마감임.
- 본 아파트는 난방방식이 도시가스 개별난방임.
- 본 아파트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총분양대금의 40%범위 내에서 중도금대출을 알선하며(개인신용상태, 한도초과, 정부정책에 의한 대출제한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불가자 또는 대출제한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계약금 10% 완납시 중도금 1차부터 가능), 중도금대출이자는 이자후불제로 시행사에서 입주지정 기간 개시전일까지 대납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입주시 시행사에서 대납한 이자를 정산해야 입주할 수 있음(중도금대출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와 인지대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은 계약자 부담임.)
- 개인의 신용상태, 한도초과, 소득, 연령 및 정부정책에 의한 대출제한 등에 의해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가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러한 사정여부를 청약 또는 계약전에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잔금은 당해주택의 사용검사일 기준(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받으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내에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 범위내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함.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투기지역의 중도금대출 제한비율 강화 및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기로 한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 단위세대 평면 내용 중 추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코니 확장 전·후 세대의 상하배치,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일부 벽체의 위치 및 시설물의 위치 및 시설물의 설치내용이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기구는 변경될수 있음.
- 본 홍보물의 배치도에서 도로의 선형, 시설물의 위치 및 형태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 및 세부식재계획은 변경될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배치도에 표시되어 있는 쓰레기 분리 수거함과 자전거 보관소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입동선을 위해 일부동을 삭제하고 302동 일부에 필로티 처리했으며 301동 1층 일부에 설치되는 경로당 및 관리사무실로 인하여 주민의 이동량 및 편의시설 설치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 필로티 세대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내 모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별 인근주변에 설치된 주민 편의시설(어린이 놀이터, 휴게시설, 수경시설, 의자공간)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각동별, 호수별 환경권, 사생활 및 일조권, 조망권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청약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및 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 할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배치도상에 표현된 바닥 패턴은 이미지컷으로 실제 시공시 재질, 색깔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패턴, 식재등은 실제시공시 변경될수 있습니다.
- 각 단위세대의 침실문 및 욕실문 높이를 내부 인테리어 마감 및 디자인을 감안하여 침실문 2300mm 욕실문 2000mm로 시공됩니다.
- 고양3차 풀림아이원아파트는 2004년 4월 19일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여 2005년 10월 5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아파트로
 - 2004. 4. 23.부터 시행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층간 슬라브 두께는 150mm로 시공되며, 상부층 바닥충격음은 판별히팅 하부에 바닥충격음완충단열재를 시공하여 상부층의 충격음 전달을 저감하였음.
 - 2005. 1. 1.부터 시행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발코니확장세대의 경우 16층 이상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시공되며 1~15층은 발코니부분에 방화유리가 높이 1m로 시공됨.
 - 지상 1~15층 층고는 2,600mm, 지상16층 이상층은 2,700mm로 시공함.
 - 2006. 1. 9.부터 시행한 환기시설 설치관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않아 각 세대 내 환기시설이 없음.
-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으로 인접한 풀림아이원아파트 6단지와 연계된 폭 7m가량의 보행자보도가 설치될 예정임.
- 20m 도로변 일부구간에 3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임(302동 1, 2호 / 301동 1호 전면 및 301동 2호 일부 전면에 설치예정)
-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는 인도에 대하여는 본 시설의 유지관리권한을 고양시에 위임하였으며 이에대해 “을”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 내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기초공사를 위하여 터파기 한 결과 지질상태가 지반조사보고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기초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 부담은 없기로 한다.(예: 지내력기초→지반치환 및 내림기초 or 콘크리트 파일기초)
- 지하주차장 상부 슬라브 구조공법을 R.C(철근콘크리트)공법에서 Deck Plate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 부담은 없기로 한다.
- 단위세대 내 각실 간벽 칸막이벽체인 경량기포콘크리트(ALC)블럭 벽체를 시멘트벽돌 벽체로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비용 부담은 없기로 한다.
- 지하주차장 내부 방습벽체인 경량기포콘크리트(ALC)블럭 벽체를 문양무늬벽체배수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비용 부담은 없기로 한다.
- 주변 혐오시설이나 교통여건등은 직접 현장확인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 전면 20m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북측 푸른마을 6단지 아파트, 동측 푸른마을 4단지 아파트, 서측 푸른마을 8단지, 남측 공동주택 아파트 부지, 푸른마을 8단지 후면에 군부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공사중 효율적인 주차동선 및 각 동별 출입구부분의 공간확보를 위해서 주차단위구획선 위치변경 및 지하주차장 면적이 증강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지하주차장 면적 및 기타 공용면적 변경분에 대한 추가부담은 없기로 한다.
- 본 공사시 사시는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대보증사 : 대한주택보증(주)

■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사용검사 포함)까지	42,787,500,000원	제 01282008-101-0006300 호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중 주요내용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②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원)	비 고
건 축	(주)이안건축사사무소	380,000,000	V.A.T 별도
전 기	(주)오성디이씨	107,000,000	
정 보 통 신	(주)오성디이씨	25,000,000	
소 방	웅도엔지니어링	98,000,000	

- 시 행 자 :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 위 탁 자 : 주식회사 미평건설
- 시 공 자 : 풍림산업 주식회사(종합건설면허:토목건축공사업 제23호)
- 분양안내 : 건본주택 (Tel : 1577-7578)
- 모델하우스 : 고양시 일산구 화정동 964-1번지 (덕양구청 건너편)
- 사이버모델하우스 : goyang3.poonglimiwant.co.kr